

先物去來의 會計處理에 관한 研究

李喜均
회계학과

〈要約〉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先物去來(선물환, 스왑, 금융선물과 옵션거래)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金融機關 및 企業의 關聯會計處理基準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기업이 先物去來를 이용하는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企業會計基準은 先物去來의 會計處理對象과 方法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企業會計基準은 先物去來에 대한 체계있는 理論 定立과 研究를 거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會計處理方法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企業會計基準을 제정하는데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 Study on the Accounting Methods for the Futures and Forward Transactions

Lee, Hi-kyoon
Dept. of Accounti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of Korea with those of U.S. in the transactions of futures(currency, other financial assets and option contracts) and forward contracts which Korean firms or financial institutions can take part in.

Since the size of futures and forward contracts made by Korean firms has been small, Korean accounting standards regulate only limited range of futures and forward contracts, in terms of accounting methods and objects,

until recently.

Thus, Korean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complemented and developed further, through systematic study and arrangement of theory for the forward and futures contrac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ntents of accounting standards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future legis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bout the futures and forward transactions.

1. 序 論

최근 國際金融市場의 不確實性과 價格變動危險은 80년대에 들어와 國際化, 開放化 趨勢에 있는 國內經濟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對外去來가 많은 국내기업들은 金利 및 換率變動危險에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따라서 國際金利 및 換率變動危險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헤징(hedging)수단과 金融市場의 自律化 및 對外開放化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 7월 미달러화와 원화사이에 實數原則에 의한 先物換去來가 도입된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國際金融市場에서 時勢가 형성되는 모든 외국통화와 원화사이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先物換去來가 인정되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先物換去來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去來目的도 단순한 헤징(hedging)수단에서 投機 혹은 資金調達目的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金融商品의 先物去來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향후 원화의 國際化 및 國內金融市場의 개방에 대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금융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10월에 外國換管理規程을 개정하여 外換 및 金利에 대한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와 옵션거래(option transactio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근 國際金融市場에서 기업의 참여범위가 넓어지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金融技法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證券管理委員會(SEC)는 上場社協議會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의하여 1988년 4월에 先渡去來(forward transactions)와 스왑거래(swap transactions)의 會計處理에 관한 例規를 발표하였으며 1990년 3월에는 企業會計基準을 개정하여 선물환, 스왑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할 수 있는 根據規程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회계처리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企業會計와 관련있는 外換先物去來의 유형별로 미국의 關聯會計規程 및 우리나라의 金融機關과 企業會計基準의 關聯規程을 비교, 검토하므로써 향후 포괄적인 회계기준제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外換先物去來의 概念

先物去來(futures transactions)는 賣買契約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상을 授受하는 現物去來(spot transactions)에 대응되는 거래형태로서 賣買契約은 현재 체결하되 매매대상을

과 그 대금의 수수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거래이다. 이와같은 賣買契約去來는 크게 先渡去來(forward transactions)와 先物去來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經濟的, 機能面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去來實行을 위한 制度的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先物去來는 公認된 去來所에서 標準화된 상품을 대상으로 競賣方式으로 定型화된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清算所(clearing house)에 의해 거래이행이 보증되며 대부분의 거래가 反對賣買(reverse trade)에 의해 결제된다. 이에 반해 先渡去來는 거래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實物이 인도되고 계약이행은 당사자간의 신용에 달려있다.¹⁾

先物去來는 크게 商品先物去來(commordity futures transactions)와 金融先物去來(financial futures transactions)로 나눌 수 있다. 金融先物去來는 전통적인 商品先物去來方法을 유가증권, 통화등 金融商品去來에 응용한 거래형태이다. 금융선물시장의 주요 거래상품은 거래대상에 따라 주요국의 通貨를 대상으로 하는 通貨先物去來(foreign currency futures transactions), 株價指數를 대상으로 하는 株價指數先物去來(stock price index futures transactions), 그리고 金融先物 그 자체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하여 거래하는 금융선물옵션거래(financial futures option transactions) 등이 있다²⁾. 先渡去來는 장래 商品時勢變動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先物商品去來方式이 外換去來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先物換契約과 先渡金利契約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對外去來를 國際金利 및 換危險으로부터 보호하고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8년에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가 도입된 후 1980년에 원화와 외국통화간의 선물환거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통화스왑은 1981년부터 銀行間去來에 이용되었으며 이자율스왑은 1984년부터, 옵션선물거래는 1987년 10월에 들어와서야 정식으로 허용되었다³⁾.

따라서 對外去來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國際金融市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金融技法으로서 先渡去來, 金融先物去來, 그리고 외환스왑(currency swap)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換率 및 金利變動에서 오는 換危險과 換危險露出(foreign exchange risk exposure)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換危險은 企業損益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계적 개념으로서 주로 去來差損益과 評價差損益을 분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거래기법이 활용된다.

다음은 企業會計側面과 관련있는 外換先物去來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 (1) 先渡去來(forward transactions)
 - 先物換去來(forward exchange transactions)
 - 先渡金利契約(forward rate transactions)
- (2) 金融先物去來(financial futures transactions)
 - 通貨先物去來(foreign currency futures transactions)
 - 金利先物去來(interest rate futures transactions)
 - 金融先物옵션거래(financial futures option transactions)

1) 韓國金融研修院編, "Futures & Option, Swap", 1990, p.1.

2) 전제서, p.2.

3) 財務部, 外換管理規程, 제 2-22조 내지 제 2-24조, 1978, 1987, 1990.

(3) 스왑거래(swap transactions)

金利스왑거래(interest rate swap transactions)

通貨스왑거래(currency swap transactions)

金利通貨스왑거래(interest rate currency transactions)

3.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

先物換去來는 장래 특정일에 사전 약정된 換率(exchange rate)로 지정된 외국통화를 매매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지만 기본적인 동기는 換率變動으로 인해서 外貨資產이나 外貨債務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즉 換危險(exchange risk)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 換率變動으로 인해서 환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外貨表示資產과 債務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先物換去來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換危險을 회피(cover)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換率變動을 이용해서 差益을 얻을 목적으로 환위험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先物換去來의 형태는 크게 換危險回避를 위한 헤징(hedging; 貿易去來 및 外貨資本去來에 따르는 환리스크 회피와 외화포지션(position)의 회피목적), 換投機(exchange speculation), 換裁定(exchange arbitrage) 및 金利裁定(interest arbitrage)등의 목적⁴⁾으로 이루어지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⁵⁾.

① 外貨資產 및 負債의 헤지목적(기업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外貨表示資產 또는 負債가 換率變動危險에 露出(exposure)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先物換契約를 체결하는 거래)

② 確認 가능한 外貨去來約定의 헤지목적(미래 外貨로 표시된 商品去來나 資金去來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을 外貨去來約定이라고 하며 이러한 약정에 의한 外貨債權, 債務의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

③ 海外現地法人의 純投資額의 헤지목적(외국에 現地法人이나 支社를 설치한 경우 換率變動危險으로부터 그 純資產額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

④ 換投機目的(미래의 換率變動을 예상하여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목적으로 선물 환계약을 체결)

전술한 바와 같이 先物換契約의 헤지거래 의미가 잠재적인 換損失을 감소 내지는 회피하는 것이지만 기업에게는 거래중개인에게 지급하는 去來費用(수수료), 先物換去來의 割引 또는 割增額(discount or premium; 계약체결일의 現物換率과 先物換率의 차이), 그리고 豫想機會費用(계약체결일의 先物換率과 결제일의 豫想現物換率과의 차이)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은 외부보고목적의 財務諸表에는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去來費用, 선물환거래의 割引 또는 割增額(discount or premium) 그리고 換率變動에서 생기는 損益등만 보고된다.

特定 先物換契約의 회계처리는 전술한 선물환계약이 의도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으며 주로

4) 朴鍾植, 國際經濟學, 貿易經營社, 1986, p.390.

5) Konrad W. Kubin,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International Business Opera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1984, p.55 참조.

두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⁶⁾.

- ① 先物換契約에 대한 去來損益은 어떻게 계산되며 그 損益은 언제 보고되는가?
- ② 先物換契約에 대한 割引 또는 割増額(discount or premium)은 契約期間 동안에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

(1) 헤지목적의 先物換契約의 會計處理

特定外貨去來가 헤지목적의 先物換契約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⁷⁾. 하나는 先物換契約이 外貨去來約定(commitment)의 헤지로서 지정되고 그로인한 헤지 효과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外貨去來約定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헤지거래로서 인정하여 선물환계약에 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선물환계약의 대상에 따라 先物換契約을 특정외화거래에 대한 헤지거래 또는 投機去來로 구분하고⁸⁾, 헤지거래인 경우에는 外貨資産 및 負債의 헤지(hedge), 해외기업의 純投資額에 대한 경제적 헤지 그리고 확정된 外貨去來約定의 헤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평가가 되어야 한다.

1) 先物換契約의 去來日의 會計處理

선물환계약은 결제일에 外換仲介人에게 지급 또는 수취할 固定債務 또는 固定債權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물환계약의 거래일에는 약정된 先物換率을 사용하여 고정된 自國通貨로 표시되며, 헤지대상통화는 現物換率을 사용하여 자국통화로 환산된 외화로 표시된다. 그리고 先物換率과 現物換率의 차이에 外貨約定金額을 곱한 금액은 先物換契約의 割引 또는 割増額(discount or premium)으로 회계처리된다.

2) 先物換契約에 대한 損益認識

헤지목적의 先物換契約에 대해 SFAS 52은 단기 및 장기에 관계없이 外貨債權 또는 債務는 결산일의 換率(현행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先物契約에 대한 損益은 貸借對照表日의 現物換率과 先物換契約締結日의 現物換率과의 차이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계산하고 계약기간에 걸쳐서 이연시켜 關聯去來의 측정에 포함시키지만 移延에 의해 미래 損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시킬 수가 없다⁹⁾.

先物換契約이 關聯계약의 거래발생일 이전에 결제일이 도래하여 완료된 경우 이연시킨 손익은 그대로 이연시켜서 회계처리한다. 또한 外貨去來約定을 헤지하는 외화거래의 손익도 이연시켜서 關聯外貨約定을 측정하는데 포함시켜야 한다¹⁰⁾. 그러나 外貨債權 또는 債務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에 헤지하는 先物換契約은 계약체결일의 환율로 계상되고 각각 결산일의 환율로

6) Andrew A. Harried and Others, *Advanced Accounting* (John Wiley & Sons Inc.), 1988, pp.459-460.

7)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52,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Stamford, Conn., FASB, 1981), Para.21.

8) *Ibid.*, Paras.18-19.

9) *Ibid.*, Para.18.

10) *Ibid.*, Para.21.

환산되기 때문에 外貨債權, 債務는 계약체결일의 現物換率(spot rate)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先物換契約이 외화채권 또는 채무를 커버(cover)하기 위한 헤지로서 체결될 경우 선물환계약에 대한 손익은 當期損益으로 인식해야 한다¹¹⁾. 한편 先物換契約이 결제일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 延長期間에 해당하는 손익은 移延處理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포함시켜야 한다¹²⁾.

3) 先物換契約의 割引 또는 割増額의 會計處理

先物換契約의 割引 또는 割増額(discount or premium; 先物換去來의 계약일 현재의 약정한 先物換率과 現物換率과의 차이를 선물환계약의 外貨金額으로 곱한 금액)은 선물환계약에 대한 손익과는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先物換契約期間에 걸쳐 손익계산에 포함시키며 期間配分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³⁾.

(2) 投機目的의 先物換去來에 대한 會計處理

投機的 先物換去來에서는 미래의 換率變動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하여 투기목적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換率變動을 기대하여 투기하는 기업은 先物換率(futures rate)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된 선물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外貨債權, 債務가 모두 先物換率로 표시되므로 선물환계약에 대한 割引 또는 割増額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¹⁴⁾.

投機目的의 先物換契約은 外貨債權 및 負債가 외화단위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貸借對照表에 수정된다. 修正金額은 지급 또는 수취하게 될 외화단위 先物換契約의 잔존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先物換率과 契約換率(또는 전기말에 선물환계약의 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한 선물환율)과의 차이에 선물환계약의 외화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¹⁵⁾ 그 損益은 換率變動이 발생한 會計期間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결제일에 약정된 先物換率과 現物換率과의 차이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손익으로 계상한다.

(3) 先物換契約의 財務諸表에 公示

SFAS 52는 先物換契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된 개별 환율과 환율변동에 따른 換算損益, 先物換契約의 評價損益 또는 선물환계약에 대한 割引 또는 割増額등의 계산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키므로써 이들을 財務諸表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當期損益計算에 포함된 外貨去來損益의 총액을 財務諸表 또는 註釋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先物換契約에 대한 손익도 去來損益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상기 이외에 外貨換算調整計定の 期中變動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① 外貨換算調整計定の 基礎殘額 및 期末殘額

11) Konrad W. Kubin, International Accounting, p.56.

12) FASB, SFAS No. 52, Para. 21.

13) FASB, SFAS No. 52, Para. 18.

14) Andrew A. Harrid and Others, Advanced Accounting, P.468.
FASB, SFAS No. 52, Para. 19.

15) FASB, SFAS No. 52, Para. 19.

16) FASB, SFAS No. 52, Para. 31 참조.

Andrew A. Harrid and Others, Advanced Accounting, P.465.

- ② 外貨換算으로 발생한 부분과 헤지거래로 발생한 부분의 금액
- ③ 換算調整에 대한 법인세
- ④ 海外事業投資의 매각이나 청산에 의해 外貨換算調整計定에서 대체되어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금액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은 未實行된 約定契約의 경우 미래에 換契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計定科目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先物換契約은 그 계약시점에서 보면 未實行契約이기 때문에 計定處理能力이 있는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備忘의 記錄을 하고 이비망적 기록을 토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또 한편으로는 投機目的의 先物換契約이 아닌 헤지(hedge)를 위한 선물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효과는 기업에 대하여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잠재적인 外貨損失로써의 機會原價(opportunity cost)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機會原價와 先物換契約의 차액, 先物換去來損益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에 따라 선물환계약이 이루어 지므로 기회원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GAAP)에 의해 작성된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에 보고하지 않고¹⁷⁾ 단지 貸借對照表日 이후에 발생한 換率變動이 중요할 경우에만 미결제된 외화거래에 미칠 영향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⁸⁾.

그러나 미결제된 先物換契約은 市場價值가 있고 그 계약에 의해 외화를 만기에 수취할 권리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정상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資産과 負債로서 보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 先物換契約의 會計處理 비교

전술한 先物換契約의 會計處理方法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⁹⁾.

계약목적	평가기준	거래이득 또는 손실의 보고	할인 또는 할증액의 회계처리
1. 해외현지법인 의 순투자액 에 대한 헤지	대차대조표일의 현 물환율	자본계정의 별도항목에 외화거래 조정으로 표시. 단, 헤지거래로 인한 외화조정금액(세후기준)이 순투자액의 외화조정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당기순익에 포함	자본계정의 별도항목으로 표시 또는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처리 하고 직선법에 의해 상각
2. 환위험노출 자산 또는 부채 포지션의 헤지	“	당기순익계산에 보고	손익의 한 항목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직선법에 의한 이연상각
3. 확인가능한 외화약정의 헤지	“	이연시켜서 관련외화거래액에 포 함(해당자산, 부채의 취득원가에 포함). 단, 헤지거래가 관련약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익은 당 기순익으로 계상	이연시켜서 관련외화거래액에 포함(해당자산, 부채의 취득원가 에 포함)
4. 투기적 거래	선물환계약의 잔존 기간동안 적용할 계약일의 선물환율	당기순익계산에 보고	별도회계처리 안함

17) Konrad W.Kubin, International Accounting, pp.55-56 참조.

18) FASB, SFAS No.52, Para. 32.

19) Andrew A.Harrid and Others, Advanced Accounting, p.470.
Konrad W.Kubin, International Accounting, p.57 참조.

래의 손익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期間對應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²³⁾

헤지목적의 先物契約인 경우 보고되는 損益은 헤지의 경제적 의미를 나타내고 동시에 헤지 효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 負債, 確定債務 또는 豫想去來 등의 헤지대상항목의 價格 또는 利率危險에 공헌해야만 한다. 만일 기업이 리스크(risk)관리활동을 수행하므로써 헤지대상항목의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다든가, 金融先物契約과 헤지대상항목간에 相關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헤지목적의 선물거래의 회계처리를 중단하고 評價損益을 當期損益으로 계상해야 한다²⁴⁾.

기업이 헤지대상항목의 市場價值變動에 의한 未實現損益을 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關聯先物契約의 시장가치변동은 그 변동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하며 資産取得 또는 負債發生後에 公正價格으로 보고되는 예정거래를 헤지하는 선물계약에도 동일한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이 자산을 공정가격으로 보고는 하지만 未實現損益을 자본의 個別項目으로 보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산을 헤지하는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액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資本項目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²⁵⁾.

① 保有資産 또는 負債와 確定契約의 헤지거래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헤지거래에 해당하는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헤지대상항목의 帳簿金額(carrying amount)의 수정으로 인식하고 確定契約(firm commitment)의 헤지에 해당하는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액에 포함시킨다.

헤지대상금융상품이 先物契約의 조건에 의해 결제되고 헤지대상항목과 선물계약이 결제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헤지거래에 대한 先物契約의 割引 또는 割増額(discount or premium)을 계약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先物契約은 결제일까지 보유되지 않으며 또한 交叉헤지(cross hedge)거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헤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²⁶⁾.

② 豫想去來의 헤지거래

豫想去來(anticipated transactions)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기업이 예상은 하지만 무는 없는 거래(保有資産 및 負債 또는 確定契約에 필요한 거래 제외)를 말하며 그 거래가 SFAS 80의 para.4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 즉 헤지대상항목이 기업을 價格 또는 金利變動危險에 露出시키고, 선물계약이 그 위험을 감소시키며 헤지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외에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先物契約의 市場價值變動을 미래 발생할 거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²⁷⁾.

- a. 豫想去來의 중요한 특징과 豫想條件을 확인할 수 있을 것(예상거래의 중요한 특징과 예상조건은 豫想去來日, 金融商品의 종류와 예상거래등을 포함).

23) 伊藤眞, 外貨換算計の實務, 中央經濟社, 1990, p.177.

24) FASB, SFAS No.80, Para.11.

25) FASB, SFAS No.80, Para.5.

26) FASB, SFAS No.80, Para.6.

27) FASB, SFAS No.80, Para.9.

- b. 豫想去來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과거 유사한 거래의 빈도, 거래를 이행할 기업의 財務와 營業能力, 資源을 특정활동에 투입할 계약, 예상거래일까지의 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 또는 營業中斷의 범위, 對替去來의 가능성등을 고려).

豫定된 資産의 取得 또는 負債의 發生을 헤지하는 목적의 선물계약의 회계처리는 이들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서 당해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과 일치되어야 하며²⁸⁾ 예상거래에 대한 先物契約의 市場價値變動은 時價基準으로 평가되는 보유자산 또는 부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시킨다.

4) 投機目的인 경우의 會計處理

기업이 선물계약을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변동을 이용하여 去來差益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선물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기간의 기업의 업적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會計上 市場價値의 변동은 그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시켜야 한다²⁹⁾. 그러나 先物契約自體가 회계상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期末에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인식되는 대상은 선물계약자체가 아니라 시장가치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損益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계약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證據金의 증가 또는 감소로서 當期損益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財務諸表의 公示

재무제표상의 適正公示는 특히 目的適合性, 中立性 그리고 理解可能性의 諸目的과 관련되어 있다. 財務情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意思決定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 공시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재무제표상의 적정공시는 앞에서 열거한 제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會計情報利用者들은 기업이 換率 또는 金利變動危險에 어느 정도 露出되어 있으며 또한 환율 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기업손익에 미치는 예상효과와 동일산업의 다른 기업의 예상손익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한다. 先物去來의 종류에 따라 投資나 投機去來일 수도 있고 혹은 資産, 負債 및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hedge)일 수도 있으며 豫想去來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계약의 회계처리는 헤지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先物契約을 체결한 기업은 헤지대상인 資産, 負債, 確定契約 또는 豫想去來의 성격과 선물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방법을 공시할 때는 선물계약의 가치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事象(events) 또는 去來의 概要를 공시³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물계약의 공시로 인하여 會計情報利用者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직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선물계약의 가치변동에 대한 손익효과는 공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FASB, SFAS No. 80, Para. 10.

29) FASB, SFAS No. 80, Para. 3.

30) FASB, SFAS No. 80, Para. 12.

스왑(swap)거래는 金融機關 및 企業에 의해 借入費用의 최소화, 자산에 대한 期待收益의 창출, 포트폴리오 리스크의 헤지(portfolio risk hedge), 또는 外換市場에서 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금리·통화스왑(interest rate currency swap)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1) 통화스왑거래의 會計處理

통화스왑거래(currency swap transactions)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SFAS 52는 통화스왑을 실질적으로 先物換契約과 동일한 外貨去來로 간주하여 先物換去來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³⁹⁾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헤지목적과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고 契約日의 現物換率로 貸借對照表上에 거래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통화스왑은 전술한 선물환계약과 동일한 면이 있지만 期間利子를 수수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SFAS 52에서는 두 통화간에 발생하는 金利差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에 준하여 이를 當期損益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금리스왑거래의 會計處理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은 두 당사자간에 資產 또는 負債에 대한 定期的인 이자지급을 固定金利에서 變動金利로, 變動金利를 다른 종류의 變動金利로 전환하기 위하여 概念上 確定된 元금을 기준으로 하여 金利支給을 교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물환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⁴⁰⁾. 금리스왑은 金利變動危險의 헤지와 자금코스트(cost)감소를 목적으로 거래되지만 投機目的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그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스왑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직 권위있는 견해가 발표된 것이 없다. 따라서 금리스왑거래의 會計處理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金利變動危險을 재무제표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契約時에 스왑거래의 인식, 헤지(hedge)시에 損益認識 그리고 금리스왑거래에 관한 情報公示등의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실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⁴¹⁾.

- ① 금리스왑의 市場價值變動에 대해 保有資產, 負債가 시장가치로 보고되어 있거나 또는 스왑거래가 투기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되지 않는다.
- ② 投機目的인 스왑거래의 시장가치변동은 매기간 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결제시 保有資產, 負債에 대한 支給利子 및 收入利子は 매기간 스왑의 純差額으로 수정되며 손익계산서상에 수입이자 또는 지급이자의 수정으로 보고한다.
- ④ 스왑거래의 早期解約에 대한 손익은 이연시켜서 헤지대상거래의 기간동안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한다.

39) FASB, SFAS No. 52, Para. 17.

40) FASB, SFAS No. 105,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 (Stamford, Conn., FASB), March 1990, Para. 36 참조.

41) R. D. Nair, Larry E. Rittenbery and Jerry J. Waygrandt, "Accounting for Interest Rate Swap-A Critical Evaluation," Accounting for Horizons, (September 1990), PP. 21-22.

FASB는 1990년 3월에 발표된 SFAS 105에서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이라 할 수 있는 금리스왑과 簿外危險(off-balance-sheet risks)이 있는 金融商品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였다. 公示內容은 금리스왑의 성격 및 조건, 關聯信用危險(credit risk)과 市場危險(market risk), 현금필요액과 關聯회계처리방법, 계약금액 및 개념상의 원금(notional principle amount),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담보가 가치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업이 입게 될 회계상 손실 그리고 신용위험의 집중도(credit risk concentration)등을 포함하고 있다⁴²⁾.

주요 회계처리방법으로 非金融會社는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수취 또는 지급해야할 차액은 契約期間에 인식시키며⁴³⁾ 金融機關은 금리스왑시장의 중개자로서 또는 거래목적의 상품으로서 또는 金利變動危險의 관리수단으로서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들 스왑은 시장가치로 기록하고 그 가치변동은 非利子收益(noninterest income)으로 계상한다. 금융기관이 스왑계약시에 받은 수수료중 信用危險과 계속적인 서비스와 관련있는 금액은 이연시켜서 스왑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계상하며 거래목적의 금리스왑은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實現 또는 未實現損益을 거래계정의 손익에 포함시키고 未實現利益은 資産, 未實現損失은 負債로 보고한다. 또한 금리변동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결한 금리스왑계약에 대해 지급 또는 수취하게 될 차액은 계약기간에 인식시킨다⁴⁴⁾.

5. 關聯規程上的 會計處理

우리나라는 1980년 7월 1일 미달러화와 원화사이에 先物換去來가 도입된 이래 현재는 國際金融市場에서 時勢가 형성되는 모든 외국통화와 원화사이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선물환거래가 인정되고 1987년 10월에는 外國換管理規程의 개정으로 금융선물거래와 스왑거래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업은 換率變動에 따른 헤지(hedge)수단으로서 이들 金融先物技法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또한 金融市場의 開放化 및 資本市場의 國際化 추세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關聯회계처리규정 그리고 財務諸表利用者가 會計情報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대한 공시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銀行 및 銀行監督院은 國內外國換金融機關의 금융선물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규정과 證券管理委員會에서 제정한 선물환거래등의 企業會計基準上的 회계처리규정이 있다. 그러나 두 機關에서 제정한 회계규정간에는 동일한 金融先物去來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企業會計基準에서는 회계처리규정과 그 방법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회계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기업의 財務狀態 및 經營成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1) 金融機關의 會計處理

42) FASB, SFAS No.105, 부록 C 참조.

43) FASB, SFAS No.105, Para.45.

44) FASB, SFAS No.105, Para.47.

우리나라의 外國換銀行業務를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外國換去來의 회계처리를 위한 통일된 基準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여러 은행이 外國換業務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8년 11월 30일 '外國換銀行 會計準則'이 한국은행에 의해 제정되었다⁴⁵⁾. 이 會計準則은 그 후 몇차례의 내용개정과 준칙의 명칭을 변경하여 銀行監督院은 1988년 11월 16일자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金融先物去來의 關聯會計處理基準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金融先物去來를 거래대상이 通貨인 外換先物去來(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와 거래대상이 金利인 金利先物去來(선도금리, 이자율선물, 이자율옵션, 이자율스왑)로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회계처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金融先物去來 契約時的 會計處理

- ① 금융선물거래 계약시 契約價額은 外換先物去來와 金利先物去來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난외의 脚註事項으로 표시하고 금융선물거래 계약가액의 원화환산은 實行換率이 약정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約定換率을 적용한다.
- ② 원화대 외화 외환선물거래의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볼 때 賣渡去來와 買入去來로 구분하여 賣渡外換先物 또는 買入外換先物로 각주표시하고 외화를 約定換率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다. 다음으로 外國通貨間 外換先物去來의 경우에는 賣渡外換先物과 買入外換先物項目을 모두 동시에 각주에 표시하며 각 항목의 價額은 각 外換의 換算當日換率(한은집중기준율)에 의한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한편 金利先物去來의 경우는 환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金利條件 또는 基準金利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계약가액의 원화환산은 換算當日의 환율을 적용한다.
- ③ 金融先物去來의 계약가액은 대차대조표 난외의 脚註事項으로서 원화평가조정에 따른 評價差額 즉, 換算差額은 각주금액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원화평가조정에 따른 평가차액을 기간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⁴⁶⁾.
- ④ 金融先物去來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예치하는 預置金 및 證據金등은 外貨預置金중 “其他預置金”계정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등은 “受入保證金”계정에 계상한다.
- ⑤ 金融先物과 관련있는 스왑수수료 및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은 지급(수취)시점에 선급비용(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회계년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金融先物去來의 損益 認識

- ① 金融先物去來의 損益은 契約約定日(또는 精算日)에 발생하는 賣買差益(또는 精算差益)만을 계약실행일(또는 정산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金融先物去來에 따른 이자의 지급일과 수취일이 다른 경우 정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수취)한 이자는 정산일 도래시까지 先給費用(先受收益)으로 계상한다.

45) 한국금융연수원편, 외환회계, 1991, pp.15-16.

46) 전계서, pp.45-46.

3) 外貨先物去來의 關聯外貨資産.負債의 평가

換率變動危險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계약기간 1년초과)의 先物換契約 또는 通貨先物契約를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外貨資産.負債는 約定換率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발생시의 환율(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시 적용된 환율)에 의한 가액과 약정환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外換先物去來借(貸)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償却(換入)한다. 여기서 외환선물의 關聯外貨資産.負債란 외환선물계약에 의해서 換率變動危險이, 헤지(hedge)된 외화자산.부채를 가리킨다⁴⁷⁾. 그러나 이 基準은 원화대 외환선물거래와 관련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즉 원화가치의 변동위험으로부터 헤지한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헤지효과를 財務諸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통화간 거래와 관련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에는 外換先物去來借(貸)가 발생하지 않는다⁴⁸⁾.

(2) 企業會計基準上的 會計處理

종전의 기준에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外貨資産.負債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貨幣性外貨資産 및 貨幣性外貨負債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非貨幣性外貨資産 및 負債는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⁴⁹⁾ 있다. 이에 따라 화폐성항목은 每會計年度 決算時마다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하며 다만 長期外貨債權 및 債務에서 발생한 臨時巨額의 평가손실(자본금의 5%초과)은 이연처리하여 5년 이내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償却 또는 換入하도록 하였다⁵⁰⁾. 그러나 종전의 이 규정은 자산.부채로 볼수 없는 換率調整借(貸)를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왜곡하고 회계정보의 진실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내기업의 對外去來가 증가하고 去來技法도 다양화 됨에 따라 환율 및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환거래, 스왑거래, 금융선물거래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은 金融先物去來를 投機目的이 아닌 實數去來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방법도 金融先物去來所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만이 가능하다⁵¹⁾. 국내에서도 資本自由化 및 金融市場의 개방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금융선물거래소의 설립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1987년 10월 外國換管理規程을 개정하여 금융선물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였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에서도 환경변화에 적용하여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4월 先物換去來, 先渡金利契約 및 스왑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例規를 발표하였으며 1990년 3월에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선물환계약, 스왑, 선물옵션거래에 대하여도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1) 先物換去來등에 관한 會計處理基準

47) 전계서, p. 41.

48) 전계서, p. 50.

49)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1981.

50)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제80조 및 제83조, 1981.

51)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제2-22조 내지 제2-25조.

企業會計基準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換率 또는 利率變動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물환계약, 스왑, 선물계약,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關聯資産 및 負債등은 그 계약에서 정한 환율 또는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⁵²⁾. 그러나 기업은 金融先物去來의 방법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헤지, 미래 보유할 자산 및 부채의 헤지 또는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基準에서는 금융선물거래를 危險回避를 목적으로 하는 헤지거래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세부적인 會計處理方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선물환, 스왑, 선물계약, 옵션거래등을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根據規程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外貨資産 및 負債評價에 대한 關聯規程과 例規84-470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어 실제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先物換去來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例規⁵³⁾

① 短期先物換去來등의 會計處理

換率 및 利率變動의 위험회피를 위한 短期先物換去來, 先渡金利契約 및 스왑거래등의 단기선물환거래는 契約締結日에 계약내용만을 비망기록하며, 결산일에도 先物去來의 契約內容과 評價損益(결산일의 現行환율과 約定환율과의 평가차이)의 내역만 대차대조표에 註釋으로 기재할 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이 결제일 이전에는 선물환거래등에 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契約實行日에가서 約定換率과 現行換率의 차이로 인하여 精算差額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차액을 先物去來損益(영업외손익)계정에 계상하여 當該 契約實行日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當期一括處理法을 따르고 있다. 이 방법은 短期保有目的의 선물환거래, 선도금리계약 및 스왑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長期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

長期(계약기간 1년초과)先物換去來는 단기선물환거래의 회계처리와 달리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선물환계약의 關聯資産, 負債를 約定換率로 평가한 가액을 財務諸表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자산과 부채가 원화로 約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한편 當該資産, 負債의 約定換率과 계약일 또는 평가일의 환율(현행환율)과 차이로 換算損益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은 先物去來借(또는 先物去來貸)계정으로 하여 相關자산과 부채계정에 加減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先物換去來의 계약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영업외 손익)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決算日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約定換率과 現行換率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의 關聯外貨資産, 負債는 평가하지 않고 단지 선물환계약의 내용과 손익내역만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先物換去來등의 公示

52)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제103조의 3, 1990년 3월 개정.

53) 證券管理委員會, 例規 84-470 “先物換去來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질의(1988.4.1)”에 대한 회신내용 참조.

先物換去來등의 公示와 관련하여 기준 제 103조 3에서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換率 또는 利率變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물환계약, 스왑, 선물계약, 옵션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 매하였을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환율 또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金融先物去來에 관한 公示방법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長短期 先物換去來등의 회계처리에서 본바와 같이, 다만 예규상으로 결산일 현재 未決濟된 先物去來의 계약금액, 계약기간, 關係 자산 및 부채, 약정이자율 또는 약정환율, 계약실행일(결제일), 결제조건 및 선물거래로 인한 손익내역등을 재무제표에 註釋으로 公示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선도계약 및 스왑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金融先物去來에 관한 公示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따라서 先物去來에 관한 包括的인 規程이 제정되기까지는 잠정적으로 주요 회계처리방법은 예규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다.

6. 結 論

金融先物去來를 會計處理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①헤지(hedge)목적과 투기목적의 先物去來의 區分과 會計處理方法 ②先物契約의 資産 또는 負債의 인식여부 ③先物契約에서 발생하는 損益의 인식방법 ④先物去來의 재무제표상 公示에 관한 내용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로 인해 선물거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보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ASB는 先物去來에 대한 統一的인 會計基準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1년 12월에 SFAS 52 “外貨換算”(foreign currency translation), 1983년 7월 “先物契約의 會計處理”(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1984년 8월에 SFAS 80 “先物契約의 會計處理”(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1990년 3월에 “簿外危險이 있는 金融商品과 信用危險이 높은 金融商品에 대한 情報公示”(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 of credit risk)을 발표하였지만 일부 금융선물거래와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선물거래는 헤지대상항목의 換率 또는 金利變動危險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投機去來는 환율 또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미래 환율과 금리변동에 따라 기업의 經營成果와 財務狀態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FASB는 선물거래를 헤지목적과 투기목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先物契約을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先物契約이 契約上의 權利, 義務로서 후에 經濟的인 權利, 義務가 뒤따르지만 선물계약의 속성으로 보아 소유권이 이전되고 채무로서 확정되든가 또는 財貨나 用役이 실제로 이전 되고 그 對價가 실제 授受되는 사실이 발생하기까지는 資産 또는 負債로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따르기 때문이다.

FASB는 先物契約의 市場價值變動의 인식방법으로 差金決濟法(close-out)과 低價法(lower-of-cost-or market basis)을 배제하고 發生主義 原則에 따라 時價法(mark-to-market)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헤지목적이나 투기목적으로 선물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市場價值變動을 그 변동이 생긴 기간에 인식하지 않으면 당해선물거래의 경제적 실태를 회계상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差金決濟法과 低價法을 인정하지 않았다. 差金決濟法은 시장가치변동을 결제시점까지 연기하는 방법이고 低價法은 시장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그 변

參考文獻

- 朴鐘植, 國際經濟學, 貿易經營社, 1986.
- 財務部, 外換管理規程, 1978, 1980, 1987.
-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1981, 1990.
- 證券管理委員會, 例規 84 - 470, “先物換去來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質疑”(1988, 4.1).
- 車明準, 옵션거래 - 이론과 실제 -, 증권서적출판부, 1991.
- 韓國金融研修院編, “Futures & Options, Swap”, 1990.
- 韓國金融研修院編, 外換會計, 1991.
- 韓國銀行, “金融先物去來의 關聯會計處理基準”(감경, 9141 - 383), 1988, 11.
- 韓國銀行外換管理部, 銀行計定科目解說, 1988, 11.
- 伊藤 眞, 外貨換算會計의 實務, 中央經濟社, 1990.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sues Paper, “Accounting for Options”(March 1986, AICPA).
- Andrew A. Harried and Others, Advanced Accounting(John Wiley & Sons Inc.), 1988.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52, “Foreign Currency Translation”(Stamford Conn., FASB), December 1981.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80,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Stamford Conn., FASB), August 1984.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05,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Stamford Conn., FASB), March 1990.
- Jenifer Francis,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and the Effect on Earnings Variability”,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90)
- Konrad W. Kubin,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International Opera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1984.
- Paul Munter, Donald K. Clancy and Tommy Moores,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The Journal of Accountancy(March 1985, AICPA).
- R.D. Nair, Larry E. Rittenbery and Jerry J. Waygrandt, “Accounting for Interest Rate Swap - A Critical Evaluation”, Accounting for Horizons(Setember 1990).
- Steven C. Blank, Collin A. Carter and Brian H. Schmiesing, Futures and Options Markets, Trading in Commodities and Financials (Prentice-Hall Inc., 1991).